

25. 대학자체평가규정

제정 : 2009.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6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자체평가”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따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매 2년 마다 1회 실시하며,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절차) 자체평가는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공시의 절차로 진행한다.

제6조(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수립한다.

제7조(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자체평가영역과 자체평가지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발전계획 수립,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기타 자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